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. 6. 15 선고 2021가단5887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
담당변호사 이동신

피 고 A
변 론 종 결 2022. 5. 25.
판 결 선 고 2022. 6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B 전 797㎡ 및 C 대 8,278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샌드위치 판넬 단층점포 및 주거시설 가건물 66.6㎡를 철거하고, 위 선내 (가)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 내지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충청남도 태안군 B 전 797㎡ 및 C 대 8,278㎡의 소유자인 사실, 소외 D는 1996.경 무단으로 위 두 필지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(이하 ‘이 사건 토지 부분’이라고 한다)에 무허가 건물인 샌드위치 판넬 단층점포 및 주거시설 가건물 66.6㎡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을 신축하여 매점 및 주거지로 사용하였고, 이후 이 사건 건물은 E, F을 거쳐 2006.경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, 피고는 2006.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, 법률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통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,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하선화

별지